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316호
----------	-------

2015. 12. 21.(월)  
정책복지 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박한범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6일

-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한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바,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※ 충북 도내 입양아동 현황 : 26명('12), 24명('13), 26명('14)

나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는 입양가정 지원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 (안 제3조)

- 나.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다. 입양축하금으로 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5조)
- 라.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 (안 제6조)
  -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
- 마. 입양축하금은 개인생활 보호차원에서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토록 규정 (안 제8조)
- 바. 입양관련 기관,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규정 (안 제13조)
- 사.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1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동 조례안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,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및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  -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은 입양되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조치되어지나,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보면 아동양육시설 입소보다는 입양이,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내용 측면에서는
  - 안 제4조에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매년 입양가정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였고,
  - 안 제5조에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을 규정하였음.
    -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아동은 200만원으로,

이는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입양축하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 및 충청도 내 4개 시·군 실태, 그리고 미지원 시·군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.

**< 타시도 입양축하금 지원 현황 >**

시도명	조례명	제정일	지원대상 범위	입양축하금
서울	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	2013. 08. 01	주민등록 (실제거주 6개월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부산	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	2013. 03. 20	·주민등록/ 실제거주 (거주기한 제한 없음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대전	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조례	2013. 11. 08	주민등록 (실제거주 1년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광주	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	2012. 10. 15	주민등록 (실제거주 1년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강원	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	2013. 06. 07	주민등록 (실제거주 1년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전북	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	2013. 11. 08	주민등록 (실제거주 1년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전남	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	2013. 07. 05	주민등록 (실제거주 1년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경북	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	2013. 07. 11	주민등록 (실제거주 1년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경남	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	2013. 3. 28	주민등록 (실제거주 1년)	일반아동: 100만원 장애아동: 200만원

**※ 충청도 내 4개 시·군 입양 장려금(축하금) 지원현황**

- ▶ 제천, 충주 : 일반 100만, 장애 200만
- ▶ 증평, 진천 : 일반 200만, 장애 300만

● 입양 축하금 지원의 경우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관한 사항 인 바,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, 수용 판정을 받음.

- 안 제10조에서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- 동 조례안은 현재 연 20여명 수준에 불과한 충청도 내 입양가정을 확대하고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부서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친 바,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1부.

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입양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2. “입양아동”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.
3. “장애아동”이란 「입양특례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.
4. “입양가정”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.
5. “입양기관”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6. “입양축하금”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(이하 “양친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,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)**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
2.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
3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
4.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
5.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·군수 및 입양기관, 입양가정,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입양축하금)**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양축하금 :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
2.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

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5조를 준용한다.

**제6조(입양축하금 지원대상)**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.

**제7조(신청 안내)** 도지사는 입양가정 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원신청)**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(이하 “신청

인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1.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·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)
2. 가족관계증명서
3.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)
4.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

**제9조(지원 절차)**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
2.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

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, 우편,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. 다만,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
**제10조(입양축하금의 환수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2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

**제11조(대장 등 비치)**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중복지원 금지)** 국가 또는 타 기관·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또는 타 기관·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13조(비용의 보조)**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14조(정보제공)**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홍보)**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, 유선방송, 충청북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권한의 위임)**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입양축하금의 적용례)**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
양친	성명	부	생년월일
		모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 (이동전화)	

입양 아동	성명	성별	[남], [여]	생년월일
	입양기관	당시 장애상태		
	입양일	년	월	일

입양 축하금	신청 금액	원	지급 내역	

입금 계좌	은행명	예금주	계좌번호
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여부			<input type="checkbox"/> 통지희망(통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표기)

「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입양아동과의 관계

충청북도지사 귀하

첨부 서류	1. 입양사실확인서	수수료
	2. 가족관계증명서 3. 「입양특례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) 4. 예금통장 사본	없음

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입양특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“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요보호아동“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.
3. “입양아동“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.

제20조(입양기관)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.

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양육보조금 등의 지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, 의료비, 아동교육지원비,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

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입양특례법 시행령

**제7조(양육보조금 등의 지급)**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.

1. 입양 당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
2. 분만 시 조산(早産), 체중 미달,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
3.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

## 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
**제15조(시·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)** ①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.

#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함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입양 축하금 :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 
(다만, 「입양특례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)

## 3. 관련조문

- 제5조(입양축하금), 제6조(지원대상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

나. 추계의 전제: 입양축하금(27,000천원)

- 입양축하금: 27,000,000원
  - 비장애아동 입양: 1,000,000원 × 23명 = 23,000,000원
  - 장애아동 입양: 2,000,000원 × 2명 = 4,000,000원

다. 추계결과: '16년~'20년까지 총135,000천원(연 27,000천원) 정도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: 충북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도비보조율에 의거 차등보조

마. 지원계획

(단위 : 명)

구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
입양축하금 대상 인원	25	25	25	25	25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계
입양축하금	27,000	27,000	27,000	27,000	27,000	135,000

주1) 상기 비용추계는 조례안의 부칙사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0년까지 5년간을 추계 기간으로 함

주2) 지원내역별 근거

- 입양축하금 : 최근 3년간 충북도내 평균 입양아동수 25명(장애 2, 비장애 23)